

My idea about the comments of 2 Drs.

令和元/7/3

OBAYASHI Muneaki

Part 1. About Chung Jae-min's comment

(1) Section 1

(a) the first paragraph

The point in this paragraph is correct.

(b) the second paragraph

(1) is not a legitimate point because it's same as the one used by some scholars to write foreign languages in olden days(ex. ^ㄷ ^ㅅ). In addition, the six-letter system, which was once conducted exclusively i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northern hemisphere, was more prevalent than these partially used ones.

(2) is generally correct. But the fact that someone stopped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need to add the 6 letters. And the Northern Leader was called the "Great Leader" at the time,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need to include the 6 letters.

(3) Section 2

The points in 1. to 3. are correct .

The point in the first paragraph in 4. is correct.

The second paragraph in 4. is pointed out that it is written in the paper like he claim. That's correct. But I can not blind the claim, because “조선어문연구회의 사업전망”(조선어연구 1 권 1 호 133 페이지) and other papers wrote that the New Korean Orthography has been conducted to some extent in North Korean education sites including Pyongyang Normal University.

The points in 5. is correct.

Part 2. About Sim CheonHyeong's comment

(1) About 1st point

This point is not related to the necessity of the 6 letters. I.e. ㅅ is ㅅ with horn, and the formations followed the principles for making letter of Hunminjeongeum.

If it's not true, then Unicode already includes the characters that are not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Hunminjeongeum. For ex., Yin-yang mixed characters (such as ㅏㅑ ㅓㅕ ㅗㅛ ㅜㅠ)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Hunminjeongeum. In that sense, the point is based on the incorrect understanding of the facts.

Also, "ㅞㅟㅠ"(v.s. ㅢㅣㅤ) can meet with the principle of Hunminjeongeum, like as "ㅠㅡ" is a variant of "ㅢㅣ".

If it's not true, then Unicode already includes the characters that are not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Hunminjeongeum. For ex., ㅞㅟㅠ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Hunminjeongeum. In that sense, the point is based on the incorrect understanding of the facts.

(2) About 2nd point

This point should state the evidence, and then it should be reviewed why it was not added.

(3) About 3rd point

This point can not be a legitimate point, since it is the context to equate with the 6 letters—which was practiced in the North Korean educational scene in the history at least—and the Jamo—that was completely used only by the inventors (and it's unclear whether the inventor was used daily)—.

(4) About 4th point

This point will not be justified, because the point disregarding that the N2243 did not display any evidence at all.

(5) About 5th point

This point is based on the fact that 6 letters are unnecessary for Korean language marking. But Such point also can't be a reason to oppose the adding, because it also applies to the Jamo like ㅞㅟㅠ ㅢㅣㅤ ㅏㅑㅓㅕ ㅗㅛㅜㅠ.

(6) About 6th point

The point is correct.

2 명의 지적에 대한 생각

령화 1년 7월 3일

大林宗晶

제 1 청재민님의 지적에 대하여

(1) 제 1 중 1 단락에 대하여

해당한 지적은 맞습니다.

(2) 제 1 중 2 단락에 대하여

(1)은 ㅁㅅㅅ 같은 다른나라말 적기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한때 쓰이던 자모들도 마찬가지로이기때문에 정당한 지적이지 못할것입니다. 게다가 완전히 부분적으로만 쓰이던 해당 자모들보다도 일단 북반부 교육기관들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던 6자모가 더 너티 쓰이였다할것입니다.

(2)는 대체로 맞는 지적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막았다고 6 자모 수록의 필요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또한 당시 북녘 지도자가 “위대한 령도자”라고 부티였곤 말곤 역시 6 자모 수록의 필요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것입니다.

(3) 제 2 에 대하여

1.~3.의 지적은 맞습니다.

4. 중 1 단락의 지적은 맞습니다.

4. 중 2 단락의 지적은 해당한 논문에서 그렇게 쓰이어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만, “조선어문연구회의 사업전망”(조선어연구 1 권 1 호 133 페이지)등에 따르면 평양사범대학을 비롯한 북녘 각지의 교육현장에서 어느정도 실시되었음을 알수 있기때문에 해당한 기술만을 맹신하지는 못할것입니다.

5. 부분의 지적은 맞습니다.

제 2 沈天珩님의 지적에 대하여

(1) 1 에 대하여

해당한 지적은 6 자모 수록의 필요성과는 전혀 관련하지 못하는 지적일것입니다.

먼저 [자모는 人]에 ㅍ을 표하얏을 뿐 그 조형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유니코드에는 이미 訓民正音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모들이 이미 들어가있습니다. ㄹ을 들어 ㄱ ㄴ ㅈ ㅊ 등 陰陽 混合된 자모들은 訓民正音의 原則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해당 지적은 사실오인에 기초한것입니다.

또한, ㅏㅑㅓ 역시 ㅏㅑㅓ의 이형(異形)임과 마찬가지로 訓民正音의 원칙과 통용될수 있을것입니다. 이것 역시 ㅏㅑㅓ이 이미 훈민정음의 원칙에 어긋나는 故로 유니코드 수록여부의 근거가 되지 못할것입니다.

(2) 2에 대하여

해당 지적은 근거 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수록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하여야 될것입니다.

(3) 3에 대하여

해당 지적은 역사상 적어도 북녘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실시되던 자모인 6 자모와 완전히 발명자들만 쓰던 (게다가 발명자조차 제대로 썼는지 불분명한) 자모를 동일시한 문맥이기때문에 정당한 지적이지 못할것입니다.

(4) 4에 대하여

해당 지적은 N2243 이 근거 자료들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음을 무시한 지적으로 정당하지 못할것입니다.

(5) 5에 대하여

해당 지적은 6 자모가 한국어 표기에 불필요함을 이유로 삼는데, 그러한 지적은 ㅏㅑㅓㅕㅗㅛ와 같은 자모 역시 해당하는 故로 수록을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할것입니다.

(6) 6에 대하여

해당 지적은 맞습니다.